

1. 다음과같이 관보게재 의뢰합니다.

가. 구 분 : 고시.

나. 게재제목 :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결정

다. 법 근거 :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

마. 게재내용 : 별첨.

첨부 : 고시문(사본)2부.

(제3안)

수신 : 건설부장관

참조 : 도시시설계획과장

제목 : 같 음.

1. 서울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을 별첨과같이 결정 및 고시하였

음을 보고합니다.

첨부 : 고시문(사본) 및 관계도면 1부.

(제4안)

수신 : 강남구청장

제목 : 같 음.

1. 뇌 구 관하 개포동 96번지 일대 토지에 수서.일원지구 택지개발

사업에 따른 신규전력 수요공급을 위해 별첨과같이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을

결정하고 고시하였으니 관련 업무수행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고, 도시계획법 제13조
규정의 절차를 수행하기 바람.

첨부 : 고시문(사본) 및 도면 1부.

(제5안)



수신 : 수신처 참조 - 56 발신 : 과장

제목 : 같 음.

1. 도개 302622-2449('89.11.9)와 관련입니다.

2. 위와 관련하여 요청하신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을 별첨과같이

결정하고 고시하였으니 관련 업무 추진에 착오없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문(사본) 및 도면 1부. 끝.

수신처 : 도시계획과장 , 도시개발과장 .

321

고

시

고시	90.2.14 제 2호	공
제정	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	공
제정	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	공

서울특별시 고시 제 32호
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 결정



1. 서울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을 아래와같이 결정하고 ,
 고시합니다.

가. 법 근거 :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
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 강남
 구청(도시정비과 또는 지적과)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90. 2. 2

서울특별시장

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규모	비고
결정	전기공급설비	강남구 개포동96번지일대	6,400m ²	개포변전소

都市計則施設(電気供給設備)決定

位置: 南区開港村96の2

面積: 6,400㎡

서울시공시	32
1990	2
장	

